

3. 이주대책사업비
4.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
5. 용수공급시설 ·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
6. 국가유산 조사비
7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로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

[시행일: 2026. 3. 26.] 제28조

제29조(기반시설의 설치지원)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1. 도로 · 철도 및 항만시설
2.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
3.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
4.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
5. 집단에너지공급시설
6. 그 밖에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

제30조(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) 법 제40조제2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.

다만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. <개정 2023. 11. 16.>

제31조(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) 법 제41조제1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
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[전문개정 2023. 11. 16.]

제32조(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)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 4. 10., 2022. 11. 1.>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
 - 가.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공사비
 - 나.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 · 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
 2.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
 - 가.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 ·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
 - 나.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 · 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
 3.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조사 · 연구비
 4. 법 제41조제1항제6호의 경비
-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2. 4. 10., 2022. 11. 1.>
1.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 · 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
 2.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
 - 가.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 ·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